

광주지방법원 2022. 7. 12 선고 2021가단5501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, 담당변호사 백형순

변 론 종 결 2022. 6. 28.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표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35,607,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5,607,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2017. 2. 28. D 주식회사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, G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○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는 2017. 5. 9. 피고에게 별표 제1,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45,000,000원을 송금하였고, 피고는 2017. 5. 10. D 주식회사에게 위 송금액과 계좌에 있던 기존 예금을 합한 60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○ 피고는 2017. 5. 10. 위 F호,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○ C는 2017. 5. 10. 피고에게 별표 제3, 4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○ 피고는 2017. 7. 4. 및 2017. 7. 5. C에게 합계 38,392,200원을 송금하였고, C는 피고에게 2017. 7. 14. 2,500,000원, 2017. 7. 31. 2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○ C는 2017. 1. 1.부터 2022. 4. 25.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다.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어머니인 H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401, 2018하면1401 파산,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. 5. 1.부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.

○ 이 법원 2021. 9. 24.자 2021차전114509 지급명령 :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14. 4. 4. 및 2014. 5. 2. 각 200,000,000원, 2017. 8. 9. 150,000,000원을 대출하였다. 원고는 위 채권을 전전양도받아 C에 대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리금 111,885,809원 및 그 중 2021. 9. 16. 기준 잔여원금 88,054,035원에 대하여 2021. 9. 17.부터 완제일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. 위 지급명령은 2021. 10. 19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, 6, 13호증, 을 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. 5. 9. 대표이사 H의 딸로서 당시 만 20세인 피고에게 합계 45,000,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2017. 5. 10. 이를 D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위 F호, 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.

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. 5. 9. 송금액 중 30,000,000원은 위 F호,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고 15,000,000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C에게 위 F호, G호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리고 30,000,000원과 같은 날 송금된 15,000,000원의 경우 그 성격이 같은 날 송금된 금원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한도 35,607,800원(= 별표 합계 란 기재 74,000,000원 - 변제액 38,392,200원)은 위 2017. 5. 9. 송금 45,000,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, 피고와 C 사이의 별표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35,607,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5,607,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

증여계약의 표시

	입금일	입금액
1	2017. 5. 9.	30,000,000원
2	2017. 5. 9.	15,000,000원
3	2017. 5. 10.	10,000,000원
4	2017. 5. 10.	19,000,000원
계		74,000,000원

